
**『인천항 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지정 보수업체 선정』
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안내**

2026. 5.

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안내

※ 평가요약(배점표)

[계량평가]
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	세부평가방법												
	[계량평가]	[80]													
가. 건설기술자 인력보유	1)건설기술인력	(20)	<p>- 공고일 기준 참여업체에 재직중인 업종별 해당분야 기술인력 3인 이상 보유하여야 함. ex) 지반조성·포장공사업 → 토목분야 기술인력 3인 이상 보유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고급이상</td> <td>중급</td> <td>초급</td> </tr> <tr> <td>7점/인</td> <td>5점/인</td> <td>3점/인</td> </tr> </table> <p>· 배점한도 초과시 20점 적용 ex) 고급 1인(7점), 중급 1인(5점), 초급 1인(3점) → 15점</p> <p>- 본 평가에서 인정하는 기술등급은 아래와 같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한국건설기술인협회」에서 인증한 기술등급 · 「한국전기공사협회」에서 인증한 기술등급 · 「한국소방시설협회」에서 인증한 기술등급 <p>- 본 평가에서 인정하는 업종별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음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업종</th> <th>해당분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금속·창호·지붕·건축물조립공사업</td> <td>건축, 토목, 기계</td> </tr> <tr> <td>기계설비·가스공사업</td> <td>기계, 건축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고급이상	중급	초급	7점/인	5점/인	3점/인	업종	해당분야	금속·창호·지붕·건축물조립공사업	건축, 토목, 기계	기계설비·가스공사업	기계, 건축
고급이상	중급	초급													
7점/인	5점/인	3점/인													
업종	해당분야														
금속·창호·지붕·건축물조립공사업	건축, 토목, 기계														
기계설비·가스공사업	기계, 건축														
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	세 부 평 가 방 법																				
나. 경영안전성	1)평가등급	(20)	-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																				
			<table border="1"> <tr> <td>회사채</td> <td>BB0 이상</td> <td>BB0 미만 BB- 이상</td> <td>BB- 미만 B- 이상</td> <td>CCC+ 이하</td> </tr> <tr> <td>기업어음</td> <td>B+ 이상</td> <td>B+ 미만 B0 이상</td> <td>B0 미만 B- 이상</td> <td>C 이하</td> </tr> <tr> <td>기업신용</td> <td>BB0 이상</td> <td>BB0 미만 BB-이상</td> <td>BB- 미만 B- 이상</td> <td>CCC+ 이하</td> </tr> <tr> <td>점수</td> <td>20</td> <td>15</td> <td>10</td> <td>5</td> </tr> </table>	회사채	BB0 이상	BB0 미만 BB- 이상	BB- 미만 B- 이상	CCC+ 이하	기업어음	B+ 이상	B+ 미만 B0 이상	B0 미만 B- 이상	C 이하	기업신용	BB0 이상	BB0 미만 BB-이상	BB- 미만 B- 이상	CCC+ 이하	점수	20	15	10	5
			회사채	BB0 이상	BB0 미만 BB- 이상	BB- 미만 B- 이상	CCC+ 이하																
			기업어음	B+ 이상	B+ 미만 B0 이상	B0 미만 B- 이상	C 이하																
기업신용	BB0 이상	BB0 미만 BB-이상	BB- 미만 B- 이상	CCC+ 이하																			
점수	20	15	10	5																			
다. 공사실적	1)공사실적	(20)	- 공사실적(건수) :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일천만원 이상의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* 공사 수행 실적에 한하여 인정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d>10건 이상</td> <td>10건 미만 ~8건 이상</td> <td>8건 미만 ~6건 이상</td> <td>6건 미만 ~4건 이상</td> <td>4건 미만</td> </tr> <tr> <td>20</td> <td>18</td> <td>16</td> <td>14</td> <td>12</td> </tr> </table> <p>*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, 지방공단</p>			10건 이상	10건 미만 ~8건 이상	8건 미만 ~6건 이상	6건 미만 ~4건 이상	4건 미만	20	18	16	14	12											
10건 이상	10건 미만 ~8건 이상	8건 미만 ~6건 이상	6건 미만 ~4건 이상	4건 미만																			
20	18	16	14	12																			
라. 기타	1)기타	(20)	- 관련 법령 상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(확인서 제출 시 인정) ·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																				
	(가)사회적 가치		5	<table border="1"> <tr> <td>해당</td> <td>미해당</td> </tr> <tr> <td>5</td> <td>1</td> </tr> </table>	해당	미해당	5	1															
	해당	미해당																					
	5	1																					
(나)안전교육이수	5	- 안전교육이수(대표자)																					
(다)재해발생수준	5	- 재해발생수준																					
(라)제재처분이력	5	-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처분 여부																					
		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이수</td> <td>미이수</td> </tr> <tr> <td>5</td> <td>1</td> </tr> </table> <p>·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</p>	이수	미이수	5	1																
이수	미이수																						
5	1																						
		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우수</td> <td>보통</td> <td>미흡</td> </tr> <tr> <td>5</td> <td>3</td> <td>1</td> </tr> </table> <p>·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/반려여부 확인서 제출 1) 우수 :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을 경우 2) 보통 : 경상(요양일 3개월 이하) 3) 미흡 : 중대재해(사망자 1명 이상 등) 발생 및 미제출</p>	우수	보통	미흡	5	3	1														
우수	보통	미흡																					
5	3	1																					
		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우수</td> <td>미흡</td> </tr> <tr> <td>5</td> <td>1</td> </tr> </table> <p>·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련 법령에 의한 제재(행정)처분 확인서 등 제출 1) 우수 : 제재(행정)처분 없음 2) 미흡 : 제재(행정)처분이 있거나 증빙자료 미제출</p>	우수	미흡	5	1																
우수	미흡																						
5	1																						

[비계량평가]
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	평가점수					비고
			수	우	미	양	가	
가. 긴급보수 적기수행 능력	[비계량평가]	[20]						
	1) 인력과 조직체계 - 조직구성원의 세부역할 · 신속한 긴급보수 업무 대응체계 구축 여부 · 긴급보수 업무수행 단계별 전담인 배치여부 · 분야별 책임자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	(10)	10	8	6	4	2	
	2) 장비운용 능력 - 대여업체 등 연락체계 구축현황 - 건설장비 임대계약 협약 등 - 협약업체 건설장비 보유현황 - 신청업체 자체 장비보유 현황	(10)	10	8	6	4	2	

[첨부] 신용평가등급의 기준

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	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	기업신용평가 등급
AAA	-	AAA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)
AA+, AA0, AA-	A1	AA+, AA0, AA-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+, AA0, AA-에 준하는 등급)
A+	A2+	A+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+에 준하는 등급)
A0	A20	A0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)
A-	A2-	A-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-에 준하는 등급)
BBB+	A3+	BBB+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+에 준하는 등급)
BBB0	A30	BBB0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)
BBB-	A3-	BBB-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-에 준하는 등급)
BB+, BB0	B+	BB+, BB0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+, BB0에 준하는 등급)
BB-	B0	BB-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-에 준하는 등급)
B+, B0, B-	B-	B+, B0, B-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+, B0, B-에 준하는 등급)
CCC+ 이하	C 이하	CCC+ 이하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+에 준하는 등급)

1. 계량평가

가. 건설기술경력자 보유

- 1) 건설기술경력자 보유는 공고일 기준 해당 참여업체에 재직중인 자이며, 3인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
- 2) 건설기술경력자 보유 평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, 한국전기공사협회,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등록된 현재 등급으로 평가합니다.

나. 경영안전성

- 1)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. 단, 설립년도가 3년 미만일 경우 실적년도에 한하여 평가합니다.
- 2)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서류 접수일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,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,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 중 한 가지에 대하여 평가합니다.
- 3) 경영안전성 계량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경우, 입찰 제출용으로, 심사가 가능한 확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다. 공사실적

- 1) 공사실적(건수)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일천만원이상의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, 지방공단 수행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.
- 2) 하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원도급 회사명과 하도급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, 발주청의 하도급 승인 서류 또는 하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라. 기타

- 1) 사회적 가치
 - 아래 사항 중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,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① 여성기업
 -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 -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에 등록된 여성기업 이어야 합니다.
 - 해당 참여사 및 대표자와 여성기업 등록 업체 및 대표자가 같아야 합니다.

② 장애인기업

-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- 해당 참여사 및 대표자와 장애인기업 등록 업체 및 대표자가 같아야 합니다.

③ 사회적기업

-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- 해당 참여사 및 대표자와 사회적기업 등록 업체 및 대표자가 같아야 합니다.

④ 사회적협동조합

-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- 해당 참여사 및 대표자와 사회적협동조합 등록 업체 및 대표자가 같아야 합니다.

2) 안전교육이수

-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9조에 따른 교육 등 고용노동부 및 위탁기관(고용노동부 등록 교육기관)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3) 재해발생수준

-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. 단, 설립년도가 3년 미만일 경우 실적년도에 한하여 평가하며, 1년 미만의 신규업체의 경우 ‘보통’으로 평가합니다.
- 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산재요양승인/반려여부 확인서에 한하여 인정합니다.

4) 제재처분이력

- 공고일로 부터 최근 1년간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전기공사업법」, 「소방시설 공사업법」에 따른 제재처분 이력 여부를 평가합니다.
- 제재처분이력은 영업정지, 과징금 등 처분 여부를 평가하며,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제재처분 확인서 또는 행정처분 사실확인서에 한하여 인정합니다.

2. 비계량평가

가. 긴급보수의 적기수행 능력

1) 인력과 조직체계

- 긴급보수 발생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위자의 직접 지시에 의해 신속히 긴급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도표 또는 조직표 등 이해가 가능하도록,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·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- 신속한 긴급보수 업무 대응체계 구축 여부
- 긴급보수 업무수행 단계별 전담인력 배치 여부
- 분야별 책임자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

※ 상기 평가자료 상에 기재한 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첨부

2) 장비운용 능력

- 고가사다리차, 지게차, 크레인, 백호우, 등의 건설장비로서 긴급보수 발생시 신속히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자체 보유장비 또는 건설장비 대여 업체 등과의 연락구축 체계를 도표 등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.

- 장비운영 능력에 있어 건설장비 대여 업체와의 장비대여 협약서 등 연락구축 체계에 포함된 대여 업체는 건설장비 등록증 등 장비보유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